[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4158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4-11-2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1-27



조동식당

정 보 공 개 서

씨엘카이로스(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씨엘카이로스(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31-945-0020 F A X: ·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본사 / 1661-4056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산내로 104번길 5-2, 1층(목동동)

홈페이지: www.wbbudae.com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 별 지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정보마당'-'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법령 및 제도'-'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 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 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조동식당 외 1	경기도 파주시 산내로 104번길 5-2, 1층(목동동)						
씨엘	법인 설립등기일	설립등기일 사업자		대표자	대표	E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카이로스㈜	2016. 8. 23	2016	5. 6. 2	조용훈, 이승하	031	-945-0020		
	법인등록번호 11	0111-60)63533	사업자등록	번호	578	-81-0042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경기도 파주	시 산내로 104번길	5-2, 1층(목동동)		
대표이사	조용훈	조동식당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씨엘카이로스(주)	외 1개	조용훈, 이승하	031-945-0020	·		
		조동식당	경기도 파주	시 산내로 104번길	5-2, 1층(목동동)		
대표이사	이승하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1-12-517-1	씨엘카이로스(주)	외 1개	조용훈, 이승하	031-945-0020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 가 설 명
명 칭	조동식당	
상 호	조동식당 OO점	
상표(서비스표)	조동식당 ^{૧૬,44년24}	상표출원 준비중
광 고	상 동	
그 밖의 영업표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75,573	77,329	98,244	1,009,688	29,609	32,789
2022년	242,197	41,672	200,525	815,958	95,133	102,280
2023년	342,684	192,943	149,741	2,032,125	-40,931	-50,784

근거자료는 별지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13444		# 10		사 업 경 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 간	직 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조용훈	대표이사	2016.8월 ~ 현재	㈜씨엘카이로스(주)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관련 임원	이승하	대표이사	2016.8월 ~ 현재	㈜씨엘카이로스(주) 대표이사	가맹사업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 원	수 (명)	직 원 수 (명)
\ \ \ \ \ \ \ \ \ \ \ \ \ \ \ \ \ \ \	상근 비상근 작 권 -		식 전 ㅜ (8)
2023년 12월 31일	2	0	7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당사의 상표(서비스표)는 현재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사의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Ⅱ. 가맹본부의 [조동식당] 가맹사업 현황

1. [조동식당]을 시작한 날 : 가맹사업 준비중

2. [조동식당]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사라이라이	조동식당	조용훈,	가맹사업 준비중	경기도 파주시 산내로 104번길
씨엘카이로스(주)	工 0 円0	이승하	기정시합 군미중	5-2, 1층(목동동)

3. [조동식당] 업종

영업표지	업	종
조도시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조동식당	기타외식	부대찌개, 갈비탕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조동식당]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 역	2021.12.31.		2	2022.12.31		7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 체	-	-	-	-	-	-	-	-	-
서 울	-	-	-	-	-	-	-	-	-
서울부산대구	-	_	-	-	-	-	-	-	-
	-	-	-	-	_	-	-	-	-
인 천 광 주	-	_	-	-	_	-	-	_	-
광 주	-	-	-	-	_	-	-	-	-
대 전	-	-	-	-	-	-	-	-	-
울 산	-	-	-	-	-	-	-	-	-
울 산 세 종	-	-	-	-	-	-	-	-	-
경 기	-	-	-	-	_	-	-	-	-
강 충 북 남	-	-	-	-	_	-	-	-	-
충 북	-	-	-	-	-	-	-	-	-
충 남	-	-	-	-	-	-	-	-	-
전 북	-	-	-	-	-	-	-	-	-
전 남	-	_	_	-	_	-	-	_	_
경 북	-	-	-		-	-	_	-	-
경 남	-	-	-	-	-	-	-	-	-
제 주	-	-	-	-	_	-	-	_	-



5. 최근 3년간 [조동식당]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6. [조동식당]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7 11	11.5	여어프리	정보공개서	신조	가	맹점/직영점의	l 수
구분	상호	영업표지	등록번호	업종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 본부	씨엘카이로스 (주)	완백부대찌개	20170348	기타외식	12/2	12/1	11/1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2	3년 가맹	점사업자의	연간 평	명균 매출		
지	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난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778'B T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	체	-	-	-	-	-	-	-	-
서	울	-	-	-	-	-	-	-	-
부	산	-	-	-	-	-	-	-	-
대	구	-	-	-	1	-	-	-	-
인	천	-	-	-	1	-	-	-	-
광	주	-	-	-	1	-	-	-	-
대	전	-	-	-	-	-	-	-	-
울	산	-	-	-	ı	-	-	-	-
세	종	-	-	-	-	-	-	-	-
경	기	-	-	-	-	-	-	-	-
강	원	-	-	-	-	-	-	-	-
충	북	-	-	-	-	-	-	-	-
충 전	남	-	-	-	-	-	-	-	-
전	북	-	-	-	-	-	-	-	-
전	남	-	-	-	-	-	-	-	-
경	북	-	-	-	-	-	-	-	-
경	남	-	-	-	-	-	-	-	-
제	주	-	-	-	-	-	-	-	-



8. [조동식당]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도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가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구 분	수 단	기 간	지출 비용(단	·위: 천원, 부	비고	
T E	구 긴	기원	합계	가맹본부	비고	
계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 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수신상품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02-2073-0987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 체결함과 동시에 국민은행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 방법은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하시어 작성한 예치 신청서와 함께 예치 가맹금을 예치하시거나,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에 접속하여 가맹금을 예치하실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자세한 예치방법은 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문의전화(02-2073-0987)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 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조동식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 증 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설비, 오픈행사 등 기타 비용	타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 계	8,800				
가맹비	5,500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교육비	3,3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3일전에 계약 해지	교육에 소요된 실제비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3,000	계약 체결과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의 미수금, 기타홍보비 등의 미수금 및 손해배상금을 제외하고 반환	반환 시 미지급 금액을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 계	11,800
가 맹 비	5,500
교 육 비	3,300
계 약 이 행 보 증 금	3,000(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 3.3㎡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 계		65,700	3,285			66 m²
0 /11		03,700	3,203			(20평)기준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30,800	1,540	내부 인테리어 공사시작 5일전	공사 전	
간 판	협력업체	3,300		간판공사 5일전	계약취소	
POS	협력업체	임 대				
가 구	협력업체	3,300				
주방설비 및 집기	협력업체	25,000		설치 5일 이전	설치 5일전 계약취소	
초도물품	당 사	3,300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으며,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 정 기 준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가맹희망자가 최종 결정)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 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귀하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점포선정 문의처 : 당사 점포개발팀(031-945-0020)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최초 개설교육 이수	특별한 기준 없음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미성년자가 아닐 것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하는 자가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조동식당]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당 사	없음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당 사	상품광고 50%	익월 15일	광고 미실시		
판촉분담금	당 사	판촉 50%	익월 15일	판촉 미실시		
교육훈련비	당 사	실 비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미실시		교육 필요시 지급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3,300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협력업체	실 비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임대료	협력업체	33	매월 20일			·
지연이자	당 사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는 없습니다.



구 분(기준 : 2023년)	내 용(단위 : 천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선 및 서류상 확인으로 대체, 또한 생략될 수 있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고
상품 및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및 재고상품의	분기별 1회	
재고관리	보관상태 등 점검	· 조기리 회	
각종 설비관리	가맹점사업자의 각종 설비관리 상태 점검	분기별 1회	· - 문의 : 가맹사업팀
접객 및 교육상태	직원 복장 및 위생상태, 고객응대방법 점검	분기별 1회	(031-945-0020)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대한 회계조사	년 1회	
기 타	가맹본부의 운영지침 등 준수여부 점검,	분기별 1회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고,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귀하는 당사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 계	5,500+@				
계속 가맹금	5,500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추가 교육비	실 비	추가교육 전 7일이내	계약연장(갱신) 전 계약포기	교육에 필요한 실제 비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 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조동식당]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양도 등에 따라 당사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소정의 교육비, 기타 실행 경비는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6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와 당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 [조동식당]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①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의 즉시 상환
- ② [조동식당] 브랜드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의 상징물의 제거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조동식당]의 가맹점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행위의 금지
- ③ 당사의 운영매뉴얼, 규정집, 지침 등의 자료 반환





④ 당사의 소유물,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의 반환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조동식당]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조동식당]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조동식당]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조동식당]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별지 #2와 같습니다.

귀하가 별지 #2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귀하가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 #3과 같습니다.

귀하가 별지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요한 변호 변제	가맹본부	계열회사
일반인에게 부대찌개, 갈비탕, 소바 등의 음식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종	완백 부대찌개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 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사 담당팀 검토 → 영업	면으로 통지하고 30일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지역 변경(안) 작성 →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	통지 → 가맹점사업자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되는 경우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당사는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당사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조동식당] 영업표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조동식당]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비즈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조동식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u>2년</u>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u>2년</u>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기맹본부가 기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 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6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 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조동식당]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에서 정한 내용 및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훼손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 당사에 대한 상품대금의 반복적인 연체, 정기 납입경비, 채무불이행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개점 준비완료 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2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 당사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 당사의 영업표지를 당사의 허가없이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 당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7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점과 동종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	
○ 당사가 공급하는 상품이외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당사가 규정한 가맹점 운영의 주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당사의 사전 승인없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	
된 경우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7조 2항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_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 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 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 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o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 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 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o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	유			
0	가맹사업법의	개정	또는	기타	식품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와 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업무위탁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대한민국 전 지역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조동식당]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조동식당]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2:00	월 25일 이상 개점 (가맹점사업자와 당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문의: 가맹사업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선 및 서류상으로 대체, 또한 생략될 수 있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	고
매장 청결 (9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3개월	가맹사업팀		
친절도 (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6개월	가맹사업팀		
위생, 회계처리 가맹본부 지침사항(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위생, 회계 및 재고, 상품관리, 가맹본부 지침 등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6개월	가맹사업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조동식당]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지역 광고의 경우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과고 서경	광고 성격부담비율본사부담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НΙЭ
		9T 94			군급 결사	비고
		상품광고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	광고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대중매체 광고
광 :	고	상품광고+가맹점 모집광고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	여부 결정→ 가맹점 부담액 제시(명세서)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100%	없음		
		가맹점 개별광고	없음	100%		
개별 행사			기타 지역광고의 경우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임의 시행		행사계획 공고 → 판촉참여 여부 결정 부담액 제시(명	!→ 가맹점

전국적인 광고 및 판촉활동은 당사는 물론 가맹점사업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전국적인 광고 및 판촉활동은 가맹점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환기를 위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불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하기 20일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www.wbbudae.com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하여 당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당사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 2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50일 내외	[11p~12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5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50 ~ 47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5 ~ 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 ~ 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 ~ 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당사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 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당사 부담 비용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당사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당사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가맹 사업팀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 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 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 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 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031- 945- 0020)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조동식당]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조동식당]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은 당사의 직영점에서 개업전에 교육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및 브랜드 소개 상품소개, POS 사용 방법 고객 응대 방법, 위생 교육	실습교육 강 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양수 교육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보수 교육	신상품 소개 마케팅, 판매촉진 방법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필요시	필요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조동식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4일	3,300	최초 계약 시 이수
양수 교육	4일	3,300	상 동
보수 교육	필요 시간	본사 방문교육 (1회 330) / 가맹점 파견근무 (1회 550)	재계약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9조에 따라 1개월 이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9조에 따라 1개월 이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031-945-002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 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에서 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 지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별-1
2.	필수구입품목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별-2
3.	상 품 가 격 표	별-3
4.	가맹점 순회 점검표	별-4
5.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직영점 현황	별-5
6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볔-6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필수구입품목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3

상 품 가 격 표

구 분	메 뉴	가 격(원)
1	부대찌개	11,000
2	갈비탕	12,000
3	설렁탕	11,000
4	도가니탕	15,000
5	소고기무국	10,000
6	판모밀	10,000
7	냉모밀	10,000
8	돈카츠 10,000	

가맹점 순회 점검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직영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 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구분	점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용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정보공개서의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조동식당]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인)

가맹본부: (인)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가맹본부용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정보공개서의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조동식당]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인)

가맹본부: (인)